

#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

의안 번호	324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3 . .  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위탁사무명 : 하남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

##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「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」 제6조 (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)
- 「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」 제6조 (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)
- 「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(지원사업)
-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4조 (위탁대상사무의 기준)
-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5조 (위탁의 적정성 검토)
-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7조 (의회 동의 등)

### ○ 추진필요성

- 하남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·수탁 협약기간이 2026. 6. 30. 만료 예정
- 하남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가족의 기능, 역량 강화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담당하는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재계약 추진 필요

### 3. 위탁사무 내용

- 하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
  - 가족지원사업
  - 가족역량강화사업 (자조모임, 가족교육, 휴식지원 등)
  - 네트워크사업 (장애인식 개선 캠페인, 홍보 등)

### 4. 민간위탁 개요

구 분	하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
소재지	하남시 미사강변대로 34번길 90, 3층
규모	연면적 66.42m <sup>2</sup> (20.09평)
정원	4명 (센터장 포함)
이용인원	연인원 20,360명 (2025.12월 기준)

### 5. 민간위탁기간: 위·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

- 2026. 7. 1. ~ 2029. 6. 30. (3년)

### 6. 수탁자 선정방식

-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(대표이사 고선순)의 재계약 신청(2026. 1. 30.)에 따라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의
- 심의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
-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, 평균점수 70점 미만(100점 만점)일 경우 선정 제외 및 공개모집 절차 이행

###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6년 예산액	산출근거
계	240,640	
하남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	240,640	인건비 187,218
		운영비 53,422

## 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사업 연속성과 종사자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우선 검토
- 민간위탁을 통해 해당 사업의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문인력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기대

## 9. 성과평가 결과
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21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
  - 평가방식: 「하남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심의위원회」 구성·운영
  - 평가기준: 심의위원회 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추진
  - 심의위원: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위원 각 2명
  - 심의일자: 2026. 2. 26.(목)
  - 평가결과
    -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하남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균 점수 89.6점(100점 만점) 획득으로 재계약 추진

## 10. 향후 추진계획

-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2025. 4월 중
- (재)계약 체결: 2025. 6월 한

## 11. 관련 법령 및 조례 : 붙임 1

## 1 장애인복지법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2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

제6조(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)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“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” (이하 “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「경기도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센터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3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

제6조(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“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” (이하 “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4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

---

**제10조(지원 사업)**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
  2.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
  3.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,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
  4.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·운영 지원
  5.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
  6.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지원
  7.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소규모 개인운영신고시설·주간활동·단기센터·돌봄 지원
  8.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, 전문 심리상담 지원
  9.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
  10.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## 5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---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**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### 제5조(위탁의 적정성 검토)

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제7조(의회 동의 등)

-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